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대만, GMO, 식품표시, 유전자변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대만, GMO, 식품표시, 유전자 변형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대만, 2016년부터 GMO 표시 전면 실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대만, 2016년부터 GMO 표시 전면 실시

대만에서는 2013년부터 NON-GMO 식품표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 2016년 1월부터 GMO 식품표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만에서 GMO식품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많은 소비자들과 친환경 유기농 농업 종사자들의 공이 크다. 2013년부터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GMO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 정부의 정치인들을 하나 하나 찾아가 GMO의 유해성을 알리고 설득한 결과 해당 법안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대만의 GMO 식품 표시제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00 사용」의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비(非)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아님」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식품 00으로 가공 제조 되었으나,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또는 「본 상품은 가공 원료 중 유전자변형식품 00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지 않음」의 문구를 표시한다.

표시문구의 글자 길이 폭은 모두 2mm이상이어야 하며,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00 사용」의 문구는 기타 문구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사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개선 요청 후에도 지속 판매 할 경우 전량 몰수 및 폐기 될 수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현재 국내에서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되었어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이며 GMO 원료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다. NON-GMO 식품표시가 증가하고 있고,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으로 GMO 식품을 수출할 경우 NON-GMO 식품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만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GMO 식품의 표시 및 허가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출 전에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 GMO 관련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compliancecloud.selerant.com/latestnews/taiwan-labeling-requirements-gmo-food.aspx>)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